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8. 10. 15.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번호	제94호
---------	------

제출연월일 : 2018. 10. 15.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저출산 극복 및 부모의 육아부담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충남아기수당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12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나. 수당신청(안 제3조)
- 다. 수당지급(안 제4조)
- 라. 지원중지 및 환수(안 제5~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 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 분석평가 : 자체개선안동의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8. 30 ~ 9. 20(20일이상)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복지정책과(041-635-2614)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기”란 출생한달부터 12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충남아기수당”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수당신청) 충남아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기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당지급) ① 시장은 보호자와 아기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영 임
	이동보육친화담당	최 영 숙
	담 당 자	정 윤 경 (746-5352)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수당지급)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논산시 거주 12개월 이하 아기에 수당지급

나. 추계결과

- 2018년 충남아기수당 지원 : 128,800천원
 - 100천원 × 644명 × 2월(11,12월)=128,800천원

계	출 생 월												
	2017.11	2017.12	2018.1	2018.2	2018.3	2018.4	2018.5	2018.6	2018.7	2018.8	2018.9	2018.10	2018.11
644	44	46	44	68	51	55	37	57	42	50	50	50	50

※ 출생월 아동현황 및 추계반영자료

- 2019년 이후 : 3,120,000천원
 - 100천원 × 650명 × 12월 × 4년=3,120,000천원

3. 작성자

사회복지과장 이 영 임

〈연도별 증가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시 비							
세 출	128,800	780,000	780,000	780,000	780,000	3,248,800	
충남아기수당지원	128,800	780,000	780,000	780,000	780,000	3,248,800	
재원 조달	128,800	780,000	780,000	780,000	780,000	3,248,800	
의존 재원	소 계	64,400	390,000	390,000	390,000	390,000	1,624,400
	보조금	64,400	390,000	390,000	390,000	390,000	1,624,4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4,400	390,000	390,000	390,000	390,000	1,624,400
	지방세	64,400	390,000	390,000	390,000	390,000	1,624,400
	세외수입						
	기금이자수익금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12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충남아기수당”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수당신청) 충남아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당지급) ① 도지사는 보호자와 아기가 ○○시·군(이하 “시·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중지)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군수는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